#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32

발의연월일: 2020. 9. 29.

발 의 자:조응천·최기상·박 정

최인호 · 김영진 · 김수흥

양향자 · 서삼석 · 한준호

홍기원 · 이소영 · 윤관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소송은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소송을 도입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특허소송 1 심은 100%, 민사소송의 경우도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자소송 도입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문서의제출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서도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록의 열람·복사가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무기대등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 및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록의 보존에도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여 기록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충실하고 신속한심리가 이뤄지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형사소송법」, 「소년법」, 「인신보호법」 등에 따른 절차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은 형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보도록 함(안 제5조).
-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등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등이 접수된 경우 즉시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등재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복(안 제10조).
- 사.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 등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송달할 전자문서등을 전산전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가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안 제11조).
- 아.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사무관 등이 일정한 사유로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복사를 신청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자. 형사소송등에서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9조).
- 차.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법원에 제출할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문서

- 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함 (안 제15조).
- 카.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도록 함 (안 제16조).

#### 법률 제 호

#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 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효율 성, 투명성을 높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 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 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 한 문서를 말한다.
- 3.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절차(이하 "형사소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이하 "전자문서등"이라 한다)를 작성·제출·송달하 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 5. "공인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을 말한다.
- 6. "행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 서명을 말한다.
- 7. "사법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 서명으로서 법관 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형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 1. 「형사소송법」
- 2. 「소년법」
- 3. 「인신보호법」
-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3장 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 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 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장 아동보호사건 부분에 한정한다)
- 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법률을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

템을 설치·운영한다.

- 제5조(전자문서등에 의한 형사소송등의 수행) 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형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 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 전자문서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검사는 제외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전자서명)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등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형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본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전자문서등의 간인(問印)은 면수(面數)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전자문서등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다.
- 제8조(문서제출방법)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자문서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 2. 전자문서등으로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전자문서등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 된 것으로 본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검사 또는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법원의 전자문서등 작성)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형사소 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고 사법 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③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화대상문서와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되어 등재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 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1. 검사
  - 2.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 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3. 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형사소송등의 진행에 동 의한 자
  - 4.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등을 전산 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송달할 전자문서등이 검찰의 형사사법정 보시스텎(「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

사법정보시스템을 말한다)에 접수된 때에 전자문서등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을 자가 그 등재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경우 전자문서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전자문서등을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을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제출한 검사,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등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 송달을 받을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등을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등과 동 일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등과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재판확정전자문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 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전자문서등(판결서, 증거목록,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전자문서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 2.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

는 경우

- 4.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전자문서등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 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7. 전자문서등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전자문서등을 열람 또는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 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8조 및 제419 조를 준용한다.
- ⑦ 전자문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열람·복사된 전자문서등의 남용 금지) 누구든지 형사소송등에서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수사기관의 전자문서등 작성)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8조 본문에 따라 법원에 제출할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등으로 작성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1.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 2. 체포·구속 및 석방에 관한 문서
  - 3.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전자화대상문 서를 포함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작성자가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 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전자문서에 대한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의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2, 제244조의3, 제244조의4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이 전자적으로 구현되도록 기술적 조치를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각 호의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화 대상문서와 그 내용과 형태가 같게 변환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 성자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취 한 뒤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되어 제8조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화문서는 전자화대상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⑦ 제5항의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전자화대상문서를 약식명령이나 파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전자문서등에 의한 집행 지휘)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6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자 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으로 형의 집행을 지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등으로 작성된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재판의 집행을 지휘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출력물은 그 전자문서등의 등본으로 본다.

- 제17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형사소송등에서의 전 자문서등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자적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한다.
- 제19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하여 열람 또는 복사한 전자문서등을 당해 사건의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